

증평 출장소 소관

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(안)

검 토 보 고

1995. 12.

내 무 위 원 회

전 문 위 원

목 차

1. 개 요	743
가.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규모	743
나. 증평출장소소관 세출예산안규모	744
2. 검 토 의 견	745

1. 개요

가.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예 산 액		기 정 예 산 액		증 △ 감	
	금 액	(%)	금 액	(%)	금 액	(%)
합 계	611,537	100	616,510	100	△4,973	△0.8
인 건 비	42,195	6.9	43,069	7.0	△874	△2.0
물 건 비	32,757	5.4	32,692	5.3	65	0.2
이 전 경 비	123,893	20.3	122,084	19.8	1,809	1.5
자 본 지 출	386,261	63.2	393,545	63.8	△7,284	△1.9
용자 및 출자	7,678	1.3	7,678	1.2	-	-
보 전 재 원	1,815	0.3	1,815	0.3	-	-
내 부 거래	8,156	1.3	6,463	1.0	1,692	26.2
예비비 및 기타	8,782	1.4	9,163	1.5	△381	△4.2

◦ '9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

6,165억 1천 만원 대비 0.8%인 49억 7천 3백만원이 감액된 6,115억 3천 7백만원 규모임.

나. 증평출장소소관 세출예산안 규모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예 산 액		(추 경) '94예산(안)		증 △ 감	
	금 액	(%)	금 액	(%)	금 액	(%)
합 계	28,829	100	29,057	100	△229	△0.8
인 건 비	4,319	15.0	4,575	15.7	△256	△5.6
물 건 비	2,914	10.1	2,909	10.0	5	0.2
이 전 경 비	1,628	5.6	1,664	5.7	△36	△2.2
자 본 지 출	19,880	69.0	19,822	68.2	58	0.3
용자 및 출자	-	-	-	-	-	-
보 전 체 원	87	0.3	87	0.3	-	-
내 부 거 래	-	-	-	-	-	-
예비비 및 기타	-	-	-	-	-	-

- 증평출장소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88억2천9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290억5천7백만원에 비하여 0.8%인 2억2천9백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서
- 도전체 일반회계 6,115억3천7백만원에 비하여는 4.7%의 비중을 점하고 있음.

2. 검토의견

1995년도 중평출장소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

사회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관 장비지원과 거택보호자 월동대책, 유아보육시설운영 지원 및 농어촌특산 단지육성 사업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보여짐.

이러한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90억5천 7백만원에 비하여 0.8%인 2억2천9백만원이 증액된 288억2천9백만원 규모임.

◦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

- 기본적 경비에 있어

인건비	2억5천6백만원 (5.6% 감)
물건비	5백만원 (0.2% 증)
이전경비	3천6백만원 (2.2% 감)

- 사업비에 있어서는

자본지출	5천8백만원 (0.3% 증) 으로
------	--------------------

평성되어 있습.

◦ 이를 세분하여 분석해보면

첫째, 인건비에 있어서 43억1천9백만원은 기정예산액 45억7천5백만원에 비해 5.6%인 2억5천6백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서

이는 '95 예산편성시 해당직급 기준호봉에 의해 계상된 예산에 대해 실질집행액과의 차액발생액에 대해 불용액발생 방지 및 예산의 적정운용을 위한 방안으로서 삽감조정하는 것에 기인함.

둘째, 물건비에 있어서 29억1천4백만원은 기정예산액 29억9백만원에 비해 0.2%인 5백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

이는 중평출장소의 시책추진 홍보를 위한 소정홍보책자 제작비 3백만원과 장애자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의료비 지원비 2백만원과,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 교육강사수당 및 국도, 지방도의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표주도색 및 경계표지판 설치비로 1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이는 인접지역의 지역적사업에 관하여도 집행기관으로부터의 재원분배된 성격의 예산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예산으로서 인정해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세째, 이전경비에 있어서 16억2천8백만원은 기정예산액 16억6천4백만원 대비 2.2% 3천6백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서

○ 예산기능별 사업내역을 살펴보면

- 장애인 차녀교육비	△1백 만원
- 저소득층 차녀학비지원	△1천 만원
-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	△5천1백 만원
- 거택보호자 월동 대책비	2천 만원
- 부자가정 지원	△1백 만원
- 노령수당	△5백 만원
-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	△3백 만원
- 결합가정 아동보호 지원	2백 만원
- 보육시설 운영비	1천5백 만원
-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및 농어민차녀학자급지원	△1백만원
- 장병검사 의부자 여비보상	△1백 만원 으로

이는 계속적 월동기대책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사회복지지원 예산이 증액계상된 것이다.

감액의 주요인으로는 집행잔액적 성격의 삭감조정 예산으로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에 의한 사업으로 지원기준의 변경과 전출

입 및 사망등의 요인에 의해 지원대상자가 감소되므로써 국비 및 도비지원금이
삭감조정 됨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네째, 자본지출에 있어서 198억8천만원은 기정예산액 198억2천2백만원 대비 0.3%인
5천8백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

○ 예산기능별 사업내역을 살펴보면

- 사회복지관 장비 구입비	1천만원
- 농어촌 특산 단지 육성	7천만원
- 한우경쟁력 제고사업	△1천8백만원
- 젖소경쟁력 제고사업	△4백만원 으로

이는 사회복지 및 특작물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증액계상과 축산의
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오던 국,도비지원 사업인 민간자본 보조사업비
를 감액조정하는 정리적 차원의 증감예산인 것으로 인정하여 줌이 타당하나
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에 관한 육성 방향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
것으로 사료됨.